

<별지 제10호>

판 매 비 중 합 산 보 고 서

(XXXX년 XX월 XX일 XXXX년 XX월 XX일)  
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회계연도 기준

금융기관 보험대리점명 :

1. 생명보험회사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당기 월납기준 초회보험료 합산 (A)		전기 월납기준 초회보험료 합산(B)		증감(A-B)		특수관계인 보험회사의 대표회사명
	금 액	비 중	금 액	비 중	금 액	비 중	
○○회사							
○○회사							
○○회사							
합 계							

- 주1) 당해연도 신규 모집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(실제입금된 초회보험료를 월 납으로 환산한 보험료)를 합산하여 산출함. 다만, 무효 또는 취소되었거나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제외
- 2) 특수관계인 보험회사의 대표회사명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4-15조 제3항에서 정한 보험회사 중 1개의 대표회사명을 말함.

2. 손해보험회사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당기 원수보험료 합산 (A)		전기 원수보험료 합산(B)		증감(A-B)		특수관계인 보험회사의 대표회사명
	금 액	비 중	금 액	비 중	금 액	비 중	
○○회사							
○○회사							
○○회사							
합 계							

- 주1) 당해연도 신규 모집계약중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 고,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원수보험료(당해연도에 모집한 신계약에 대한 실 제입금된 보험료)를 합산하여 산출함. 다만, 무효 또는 취소되었거나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제외
- 2) 특수관계인 보험회사의 대표회사명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4-15조 제3항에서 정한 보험회사 중 1개의 대표회사명을 말함.